

뱅크월렛 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대비표

1. 개정시행(예정)일: 2020. 5.14

2. 개정 내용

개정 전	개정 후	비고
<p>제1조(목적) ~ 제15조(모바일현금카드 관리) (생략)</p> <p>제16조(모바일현금카드 해지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서비스를 제공받는 USIM칩 등의 재발급, 서비스를 이용 중인 스마트폰의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, 명의변경 및 이에 준하는 사유 발생 시 회원은 사전에 제1항에 정한 방법으로 모바일현금카드를 해지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사고에 관한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.</p> <p>제 17 조(CD/ATM에 의한 거래) ~ 제 22 조(변경, 사고신고 등) (생략)</p> <p>제 23 조(면책)</p> <p>① <u>회원은 제22조 제1항의 분실, 도난 등 사고신고 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.</u></p> <p>② 은행은 회원의 모바일현금카드 이용 시 회원이 입력한 지갑비밀번호 등 각종 비밀번호와 회원이 신고한 비밀번호를 대조하여 일치하는 경우에만 한하여 거래를 허용하며, <u>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이러한 거래에 대해 회원에게 손해가 생겨도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.</u></p> <p>③ 회원 이외 제3자의 모바일현금카드 애플릿 위. 변조, “뱅크월렛” 시스템</p>	<p>제1조(목적) ~ 제15조(모바일현금카드 관리) (좌 등)</p> <p>제16조(모바일현금카드 해지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서비스를 제공받는 USIM칩 등의 재발급, 서비스를 이용 중인 스마트폰의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, 명의변경 및 이에 준하는 사유 발생 시 회원은 사전에 제 1 항에 정한 방법으로 모바일현금카드를 해지하여야 합니다. <u>회원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모바일 현금카드를 해지하지 아니한 경우 그로 인해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은행은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이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.</u></p> <p>제 17 조(CD/ATM에 의한 거래) ~ 제 22 조(변경, 사고신고 등) (좌 등)</p> <p>제 23 조(면책)</p> <p>① <u>회원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제22조 제1항의 분실, 도난 등 사고신고를 지연한 경우, 은행은 사고신고 전에 발생한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이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.</u></p> <p>② 은행은 회원의 모바일현금카드 이용 시 회원이 입력한 지갑비밀번호 등 각종 비밀번호와 회원이 신고한 비밀번호를 대조하여 일치하는 경우에만 한하여 거래를 허용하며, <u>은행이 회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한 경우 은행은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이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</u></p> <p>③ 회원 이외 제3자의 모바일현금카드 애플릿 위. 변조, “뱅크월렛” 시스템</p>	<p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문구 수정</p> <p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문구 수정</p> <p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문구 수정</p>

뱅크월렛 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대비표

개정 전	개정 후	비고
<p>장애 및 시스템 보안성 취약 등으로 인하여 모바일현금카드 관련 거래 처리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은행은 원칙적으로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. 다만, 은행이 회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입증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<u>회원이 책임을 부담합니다.</u></p> <p>1. ~ 2. (생략)</p> <p>④ 스마트폰 또는 USIM칩 등 자체의 결함으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을 할 수 없는 경우,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<u>은행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</u></p> <p>제 24 조(뱅크머니 발급) ~ 제 25 조(이용한도) (생략)</p> <p>제 26 조(뱅크머니 해지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회원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 1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뱅크머니를 해지하여야 하며,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사고에 관한 모든 책임은 <u>회원에게 있습니다.</u></p> <p>1. ~ 2. (생략)</p> <p>③ 은행은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뱅크머니 잔액을 회원 명의의 계좌로 환급하고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.</p> <p>1. 뱅크머니를 사용한 거래가 부정사용 또는 비정상 거래로 판단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</p> <p>2. <u>관계법령, 감독규정, 감독기관의 지침 등에 의해 “서비스” 제공이 곤란한 경우</u></p> <p>3. ~ 5. (생략)</p>	<p>장애 및 시스템 보안성 취약 등으로 인하여 모바일현금카드 관련 거래 처리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은행은 원칙적으로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. 다만, 은행이 회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입증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<u>은행은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이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.</u></p> <p>1. ~ 2. (좌 등)</p> <p>④ 스마트폰 또는 USIM칩 등 자체의 결함으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을 할 수 없는 경우,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<u>은행은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이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.</u></p> <p>제 24 조(뱅크머니 발급) ~ 제 25 조(이용한도) (좌 등)</p> <p>제 26 조(뱅크머니 해지)</p> <p>① (좌 등)</p> <p>② 회원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 1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뱅크머니를 해지하여야 합니다. 회원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뱅크머니를 해지하지 아니한 경우 그로 인해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<u>은행은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이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.</u></p> <p>1. ~ 2. (좌 등)</p> <p>③ 은행은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뱅크머니 잔액을 회원 명의의 계좌로 환급하고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.</p> <p>1. 뱅크머니를 사용한 거래가 부정사용 또는 비정상 거래로 판단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</p> <p>2. <u>전자금융거래법, 전자상거래법, 개인정보보호법,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,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감독기관의 지침 등에 따라 “서비스” 제공이 곤란한 경우</u></p> <p>3. ~ 5. (생략)</p>	<p>문구 수정</p> <p>문구 수정</p> <p>문구 수정</p> <p>문구 수정</p>

뱅크월렛 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대비표

개정 전	개정 후	비고
<p>④~ ⑤ (생략)</p> <p>제 27 조(충전) ~ 제 29 조(환불) (생략)</p> <p>제 30 조(친구에게 보내기, 청구하기)</p> <p>① ~ ④ (생략)</p> <p>⑤ 회원은 친구에게 보내기 이용 시 상대방의 정보를 정확히 선택, 확인 혹은 입력하여야 하며 이를 정확하게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<u>은행은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.</u></p> <p>⑥ ~ ⑦ (생략)</p> <p>제 31 조(자동충전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제 28 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충전이 실행되지 않을 수 있으며, <u>은행은 자동충전 미실행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</u></p> <p>제 32 조(결제 및 거래 취소) ~ 제 35 조(변경, 사고신고 등) (생략)</p> <p>제 36 조(면책)</p> <p>① 은행은 회원의뱅크머니 이용 시 회원이 입력한 지갑비밀번호 등 각종 비밀번호와 회원이 신고한 비밀번호를 대조하여 일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거래를 허용하며, <u>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 이러한 거래에 대하여는 회원에게 손해가 생겨도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.</u></p>	<p>④~ ⑤ (생략)</p> <p>제 27 조(충전) ~ 제 29 조(환불) (생략)</p> <p>제 30 조(친구에게 보내기, 청구하기)</p> <p>① ~ ④ (좌 등)</p> <p>⑤ 회원은 친구에게 보내기 이용 시 상대방의 정보를 정확히 선택, 확인 혹은 입력하여야 합니다.</p> <p>(삭제)</p> <p>⑥ ~ ⑦ (좌 등)</p> <p>제 31 조(자동충전)</p> <p>① (좌 등)</p> <p>② 제 28 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충전이 실행되지 않을 수 있으며, <u>은행이 회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한 경우 자동충전 미실행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은행은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이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.</u></p> <p>제 32 조(결제 및 거래 취소) ~ 제 35 조(변경, 사고신고 등) (좌 등)</p> <p>제 36 조(면책)</p> <p>① 은행은 회원의뱅크머니 이용 시 회원이 입력한 지갑비밀번호 등 각종 비밀번호와 회원이 신고한 비밀번호를 대조하여 일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거래를 허용하며, <u>은행이 회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한 경우 은행은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이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.</u></p>	<p>문구 수정 및 삭제</p> <p>문구 수정</p> <p>문구 수정</p>

뱅크월렛 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대비표

개정 전	개정 후	비고
<p>② 회원 이외 제3자의 뱅크머니애플릿 위. 변조, “뱅크월렛” 시스템 장애 및 시스템 보안성 취약 등으로 인하여 뱅크머니 관련 거래 처리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은행은 원칙적으로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. 다만, 은행이 회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입증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<u>회원이 책임을 부담합니다.</u></p> <p>1. ~ 2. (생략)</p> <p>③ (생략)</p> <p>④ 네트워크형 뱅크머니를 발급받은 회원은 제 35 조 제 1 항의 분실·도난 등 사고 신고 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.</p> <p>⑤ 스마트폰 또는 USIM 칩 등의 자체의 결함으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을 할 수 없는 경우,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<u>은행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</u></p> <p>제 37 조(멤버십서비스) ~ 제 42 조(약관의 변경) (생략)</p> <p>제 43 조(개인정보 등의 처리) (생략)</p> <p>① 은행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.</p> <p>② 은행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회원의 동의를 받고 개인정보를 제휴사, 가맹점 등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.</p>	<p>② 회원 이외의 제 3자의 뱅크머니 애플릿 위. 변조, “뱅크월렛” 시스템 장애 및 시스템 보안성 취약 등으로 인하여 뱅크머니 관련 거래 처리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은행은 원칙적으로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. 다만, 은행이 회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입증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<u>은행은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이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.</u></p> <p>1. ~ 2. (좌 등)</p> <p>③ (좌 등)</p> <p>④ 네트워크형 뱅크머니를 발급받은 회원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제 35 조 제 1 항의 분실·도난 등 사고 신고를 지연한 경우, 은행은 사고신고 전에 발생한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이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.</p> <p>⑤ 스마트폰 또는 USIM 칩 등의 자체의 결함으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을 할 수 없는 경우,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<u>은행은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이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.</u></p> <p>제 37 조(멤버십서비스) ~ 제 42 조(약관의 변경) (좌 등)</p> <p>제 43 조(개인정보 등의 처리) (좌 등)</p> <p>① 은행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,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,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.</p> <p>② 은행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,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,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회원의 동의를 받고 개인정보를 제휴사, 가맹점 등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.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및 그가 받게 될 개인정보는 「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」에 따라 정합니다.</p>	<p>문구 수정</p> <p>문구 수정</p> <p>문구 수정</p> <p>문구 수정</p> <p>문구 수정</p> <p>문구 수정</p>

뱅크월렛 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대비표

개정 전	개정 후	비고
<p>③ ~ ⑤ (생략)</p> <p>제 44 조 (민원처리) (생략)</p> <p>제 45 조 (약관 외 준칙)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약관의 해석에 <u>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법, 전자거래기본법,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, 전자서명법 등 관계 법령,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, 은행, 가맹점 또는 제후사의 고객약관 및 상관계에 따르며, 은행은 본 약관의 규정을 들어 관계 법령 위반에 대한 면책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.</u></p> <p>제46조(관할법원) (생략)</p> <p>(신 설)</p>	<p>③ ~ ⑤ (생략)</p> <p>제 44 조 (민원처리) (생략)</p> <p>제 45 조 (약관 외 준칙)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<u>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, 전자금융거래법,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,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,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, 개인정보 보호법,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,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, 위 법률의 시행령 및 고시 외에 금융결제원 모바일공동업무 규약에 따르며, 은행은 본 약관을 근거로 면책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.</u></p> <p>제 46 조(관할법원) (좌 등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본 약관은 2020년 5월 14일부터 시행합니다.</p>	<p>문구 수정</p>

3.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개정약관 적용 여부: 적용